

서 울 특 별 시

원본대조필

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(02)-3707-9355~6 (FAX)3707-9369
중소기업과 과장 추진감 담당사무관 정행교 담당자 고석창

문서번호 중소 55471- 111

시행일자 1998. 11. 12.

(제1안)

수신 내부결재



취급	시 장	
보존		
산업경제국장	전 철	11월 1
중소기업과장	11/16	법무담당관 심사필
		산업정책과장 최자호
		기획행정담당사무관 김재경
◎★ 기 안	고 석 창	협조

제목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 입법예고(안)

- 우리시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시설중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등은 서울특별시공공시설의설치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조례에 창업보육센타는 개별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해 왔으나
- 행정자치부에서 현행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시설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한 공공시설로 볼수 없으므로 이의 삭제를 요망하는 시정권고가 있어(행자부 공기 13330-118. '94.4.22)
- 현 공공시설의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 및 개별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향후 유사시설 확충시 신속하고 적기에 대처하는등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시설을 통합관리하는 단일조례를 별안과 같이 제정 운영하고자
-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의뢰코자 하오며 아울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입법예고 내용을 보고하고자 합니다.

- 붙임 1.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(안) 1부.
2. 입법예고(안) 1부. 끝.

(제2안)

수신 공보관

참조 홍보담당관

제목 입법예고 의뢰

1.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을 입법 예고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(안) 1부.

2. 입법예고(안) 1부. 끝.

산 업 경 제 국 장

(제3안)

수신 행정자치부장관

참조 공기업과장

제목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 입법예고 사항 보고

1. 공기 13330-118('94.4.22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 중소기업지원 시설의 삭제 권고와 관련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(안)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붙임 1.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(안) 1부.

2. 입법예고(안) 1부.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공 고 (안)

서울특별시공고 제 602 호

기사일자	1998.11.6	제	602
담당자	경제企划本部 企划課長		
이상우	사 7-6	이상우	화운봉

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

-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를제정
함에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
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
입법 예고합니다.
-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산업
경제국 중소기업과(전화 : 3707-9851,9352)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.

1998년 11월/일

서 울 특 별 시 장

가. 제정사유

현재 서울특별시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와
일부 개별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지원시설운영의
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시설을 통합적으
로 관리·운영 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(1) 적용대상 시설물

명 칭	위 치	기 능
서울창업보육센타	강서구 등촌동 647-26	중소기업 창업 및 기술개발지원
서울애니메이션지원센타	중구 예장동 8-145의 1	애니메이션산업 육성 · 지원
잠실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	송파구 잠실1동 10	중소기업제품 전시 및 판매
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	영등포구 여의도동 23	"
창동중소기업제품전시장	도봉구 창동 1-10	중소기업제품 전시 홍보

(2) 지원시설의 관리 · 운영 : 민간에 위탁운영 원칙

(가) 위탁운영기간 : 3년(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)

(나) 수탁자 선정 기준

-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· 장비 및 기술수준
- 재정적인 부담 능력, 책임능력, 공신력
- 사무의 수행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

(3) 시설사용자 등에 대한 사용료 등의 부과 · 징수

종 별	구 분	대부료(사용료)	비 고
중소기업 입주 (입점)시설	대 부 료	연간당해 재산평가액의 10/1000이상	재산평가액의 결정 및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를 준용
중소기업 제품 전시장	사 용 료	여의도: 700원(m ² /일) 창 동: 600원(m ² /일)	단, 비수기(1,2,7,8,12월) 에는 50% 범위 내 감면
중소기업지원시설에 입주(입점)한 기업이나 전시장 등 지원시설운영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 시설(운행, 창업투자회사, 식당, 약국 기타의 편의시설 등) 등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가액의 25/1000이상을 대부료 등으로 징수, 이 경우 재산평가액의 결정 및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를 준용			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,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의 창업·운영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한 시설(이하 “지원시설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지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·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설치)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별표 1과 같다.

제2장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

제4조(관리·운영의 기본원칙)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위탁(이하 “위탁”이라 한다)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시설의 사용 등) ① 지원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지원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자에 대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소정의 대부료·사용료 등을 부과·징수한다.

제3장 지원시설 관리·운영의 위탁

제6조(위탁기간 등) ①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원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가 그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지원시설을 관리·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의 연장 신청을 접수한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자의 사무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, 그 평가의 결과 수탁자가 계속하여 지원시설을 관리·운영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7조(수탁자 선정) 시장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, 기구, 장비, 시설 및 기술수준
2. 재정적인 부담능력
3. 책임능력, 공신력
4.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

제8조(위탁계약) 시장은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
2. 위탁기간
3.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
5. 지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6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대부료 등의 수납)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·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수있으며, 이 경우 수탁자는 징수한 대부료·사용료등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- 제10조(수탁사무의 처리)
- ① 수탁자는 지원시설을 관리·운영 함께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사무의 자연처리·불필요한 서류의 요구·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·장비·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·집행하여야 하며,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,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 -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·개축하거나,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⑤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·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예산 및 회계) ① 위탁운영하는 지원시설의 회계는 시설별 또는 수탁주체별로 구분관리한다.

② 수탁자는 제5조 별표2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설운영에 따른 관리·운영비나 시설의 입장료, 시설장비이용료등(이하“이용료등”이라한다)을 그 이용자 등에 대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등은 수탁받은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함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수 있다.

④ 제2항의 운영결과 잉여금은 세입에 이월하거나 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할 수 있다.

⑤ 수탁자는 매회계년도 개시 3개월전에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 보완 등을 요구할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2조(운영지원 등)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지원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력·장비·시설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수탁자는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위원회) ① 수탁자는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1.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
2. 지원시설 관리·운영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3. 지원시설 사용신청자의 사용 등의 허용여부
4. 기타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 운영위원회의 구성,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4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지원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,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사항에 관한 시설·장부·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5조(위탁계약의 해지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8조에 의한 위탁계약은 이를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
 2. 수탁자가 지원시설을 관리·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3.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조건을 위반한 때
 4.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- ② 시장이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 4 장 보 칙

- 제16조(선정위원회)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선정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·전문가·시민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선정위원회는 지원시설별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시장이 구성·운영하며, 당해 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대상 지원시설에 대한 수탁자를 선정한 때와 동시에 해산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선정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지원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당시 “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” 및 서울특별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운영중인 지원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운영중인 지원시설로 본다.
-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지원시설의 위탁운영자에 대하여는 위탁운영 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계약(협약)내용대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창업보육센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 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별표1 서울특별시립공공시설중 “지역경제국 (경제진흥과, 중소기업과)”란은 이를 삭제한다.

구분	주관국(과)	시 설 명
삭제	산업경제국 (산업정책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산업지원센타 ○ 서울애니메이션지원센타
	산업경제국 (중소기업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잠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○ 여의도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장 ○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장

2. 별표2 위탁사무중 “지역경제국(경제진흥과, 중소기업과)” 란은 이를 삭제한다.

구분	주관국(과)	사 무 명
삭제	산업경제국 (산업정책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산업 지원센타 관리운영 ○ 서울애니메이션 지원센터 관리운영
	산업경제국 (중소기업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잠실 중소기업 제품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○ 창동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관리 운영

【별표1】

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 명칭 및 기능

명 칭	위 치	기 능
서울창업보육센타	강서구 동촌동 647-26	중소기업 창업 및 기술개발지원
서울애니메이션센터	중구 예장동 8-145의 1	애니메이션산업 육성·지원
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	충내 1 삼일1동 10	중소기업제품 전시 및 판매
창동중소기업제품전시장	영등포구 여의도동 23	중소기업제품 전시 홍보
	도봉구 창동 1-10	

【별표2】

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 대부·사용료 기준표

1. 중소기업입주(입점)시설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

종 별	구 분	대부료(사용료)	비 고
중소기업입주 (입점)시설	대 부 료	연간 당해재산평가액의 10/1000이상	재산평가액의 결정 및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5조를 준용
중소기업제품 전시장	사 용 료	여의도: 700원(m ² /일) 창 동: 600원(m ² /일)	단, 비수기(1,2,7,8,12월)에는 50% 범위내 감면
다만, 중소기업지원시설에 입주(입점)한 기업이나 전시장 등 지원시설운영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시설(은행, 창업투자회사, 식당, 약국 기타의 편의 시설 등) 등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가액의 25/1000이상의 대부료를 정수한다. 이 경우 재산평가액의 결정 및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를 준용			